

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 
재정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
**제 안 설 명**

○ 존경하는 박중화 위원장님!

그리고 교통위원회 선배·동료 위원님 여러분!

더불어민주당 은평구 제1선거구 성흠제 의원입니다.

○ 본 의원이 발의한 「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.

○ 이번 조례안은 마을버스와 시내버스 간에 중복 정류소를 4개소 이내로 제한한 현행 규정에 따라 마을버스 노선에 부득이 이면도로와 어린이 보호구역을 포함하여 교통사고의 위험이 증가하는 문제를 해소하고자 마련하였습니다.

○ 본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

현행 조례 제10조제4항에서 ‘일반노선버스의 운행구간에 마을버스가 운행하는 경우 중복운행구간에서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정류소는 각각 4개소 이내로 설치하여야 한다’고

규정한 부분을 ‘6개소 이내’ 로 개정하는 사안입니다.

○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

많은 시민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마을버스의 사고 위험을 줄이고 마을버스 노선 설계의 불합리성을 해소하여 시민의 교통복지가 증진될 것입니다.

○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, 개정조례안의 취지를 감안하여 본 의원이 제안드린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선배·동료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.

감사합니다.